

등록번호	자원순환과-35627
등록일자	2025. 12. 19.
결재일자	2025. 12. 19.
공개구분	비공개(7)

주무관	청소행정계장	자원순환과장	기후환경국장		
함채원	김성수	병가	전결 2025. 12. 19. 백운초		
협 조					



-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칩 등 공급 - 민간 위탁 업무 감사 결과

군 산 시
자 원 순 환 과

-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칩 등 공급 - 민간 위탁 업무 감사 결과

I 관련법령

-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7조(처리상황의 감사)
-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공급업무 위탁운영 협약서 제11조(정기적 결산보고 및 지도감독)

I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25. 12. 15. ~ 12. 16. * 감사대상 기간 : 2024. 12. ~ 2025. 11.
- 감사대상 :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(대표 : 고계곤 / 주소 : 하포로 29)
- 감사내용 :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전반(운영 및 관리 등)
- 감사반 : 총 3명(청소행정계장, 함채원 주무관, 김태현 주무관)
- 현장사진



III 감사결과

○ 점검표 결과

일련 번호	항 목	점검결과	적합여부
1	사무의 지연처리,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여부	▶ 미발견	여
2	보안시설을 갖춘 보관창고 165㎡(사무실 포함) 이상 여부	▶ 창고 237㎡ 확인	여
3	배달 화물차량 2대 이상	▶ 봉고 81구0731 ▶ 봉고 85거7432	여
4	공급업무 인력 4명 이상 (배달, 전산 운영 능력이 있는 사무원 포함)	▶ 인력 9명	여
5	봉투 및 납부칩 기간별(일자별) 입출고 현황 작성 관리 여부	▶ 전산관리시스템 확인 시 미흡부분 발견	부
6	봉투 및 납부칩 전용 창고 여부	▶ 전용창고 및 건축물대장 확인	여
7	봉투 및 납부칩 종류별 규격별 식별 표시 여부	▶ 표지판 설치 확인	여
8	화재 발생, 분실, 훼손 방지 보관 여부	▶ 화재보험 가입 ▶ 무인경비 용역시스템 가입 ▶ 설치류 방제 용역시스템 가입 (보험 및 용역 가입증서 확인)	여
9	유통 공급계획 수립 여부	▶ 유통공급 계획 수립	여
10	판매소별 봉투 등의 공급 내역 작성 여부	▶ 판매관리시스템에 작성 확인	여
11	사무편람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작성 여부 - 보관·관리 / 공급업무 / 수납대금 관리 및 납부 - 보급과 관련한 민원 처리 등	▶ 특이사항 없음	여
12	사무편람 비치 여부	▶ 비치 확인	여
13	사무편람 작성 후 군산시장 승인 여부	▶ 위탁계약 시 제출	여
14	공급 판매 및 재고량 등의 대금 수납상황 점검	▶ 판매대금 전용계좌 통장 미확인(전산거래내역 확인)	부
15	사무소 또는 창고 위치 변경 및 종사원 교체 시 변경사항 보고 여부	▶ 종사자 변경사항 미보고	부
16	군산시 지정 판매소 외 공급 여부	▶ 미발견	여
17	불법유통 및 불법행위 발견 시 보고 여부	▶ 미발견	여
18	봉투 및 납부칩 지정된 가격 판매 준수 여부	▶ 미준수 상황 미발견	여
19	공급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 처리 후 보고 여부	▶ 특이 민원 미발견	여
20	협약서 제18조에 의거한 각종 대장 등 작성 관리 철저 여부	▶ 전산관리시스템 및 장부 확인	여

IV 주요 지적사항

- [점검표 5번] **봉투 및 납부칩 기간별(일자별) 입출고 현황 작성 미흡**
 - 관련규정 :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공급업무 위탁운영 협약서 제5조제1항
 - 지적사항
 - 마대 제작업체(대일실업)에서 2025.12.08.자로 30,000매 수탁업체로 납품 하였으나, 2025.12.15.기준 판매관리시스템에 재고량이 반영되지 않음.
 - 감사결과 : 시정조치
 - 처분계획 : 판매관리시스템에 기간별(일자별) 봉투 등 입출고 현황이 즉시 반영되도록 시정 요구

- [점검표 14번] **대금 수납 상황 점검 관련 감사자료 불충분**
 - 관련규정
 -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공급업무 위탁운영 협약서 제8조, 제11조
 - 지적사항
 - 제11조에 따른 대금 수납상황 점검과 관련,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대금 거래전용 계좌 확인을 위해 통장을 감사자료로 추가 요구하였으나, 판매처의 개인정보 등의 거래 내역이 공개된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않음.
 - 이는 협약서 제8조에 따라 위탁판매 대금만을 전용으로 입출금 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협약을 위반한 사유임.
 - 감사결과 : 시정조치
 - 처분계획 : 향후 위탁판매대금 전용 계좌만을 생성하여 사용하고 다음 감사 시 수탁업체는 본 위탁업무가 협약서 제3조에 따른 판매 대금 수납관리를 포함하고 있고, 제11조 그에 따른 수납관리를 군산시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, 제8조 봉투 등 판매대금만을 전용으로 하는 통장을 개설 후 감사자료로 공개하도록 시정 요구

□ [점검표 15번] 종사원 교체 시 변경 사항 미보고

- 관련규정 :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공급업무 위탁운영 협약서 제11조제2항
- 지적사항
 - 관련규정에 따라 수탁업체는 종사원 교체 등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“군산시장”에게 보고해야 하나, 수탁업체가 2025.10.01.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음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음
- 감사결과 : 시정조치
- 처분계획 : 협약에 따른 변경시 즉시 보고하도록 시정 요구

V

향후계획

- 감사결과 처분 통지서 통보 등 : 2025. 12.
- 시의회 보고(기획예산과) 및 군산시 홈페이지 공개 : 2025. 12.